

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0. 29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소비자보호법」이 「소비자기본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정함(안 제8조 내지 제13조).
- 나.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 대하여 정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- 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- (2) 입법예고 : 2007. 10. 12. ~10. 22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「소비자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
2.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수립 및 추진
3.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
4.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

②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고 한국소비자원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시민생활의 안정대책) ①시장은 시민의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·제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, 단체,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공정거래 질서의 확립)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 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비자보호협정의 체결) ①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간의 협정을 체결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거나, 변경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, 성실한 이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조(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) ①시장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소비자단체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
3.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사항
4.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경제과학국장이 된다.

③당연직위원은 경제정책과장이 되고, 위촉위원은 경제계, 소비자대표,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가와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촉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정)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소비생활센터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소비자시책 수립 및 실시
2.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3.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
4. 소비자, 사업자,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
5.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 등
6.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, 권고, 공표 등
7.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·건의
8.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·육성
9. 그 밖에 소비자 권익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소비생활센터 구성 등) ①센터는 대전광역시 소속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,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파견된 근무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. 다만, 위원회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.

【소비자기본법】

제6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.

1.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·폐지
2.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
3.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
4.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·육성

제7조 (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)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 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【소비자기본법시행령】

제3조 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1.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
2.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
3.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·권고·공표 등
4. 소비자단체·소비자생활협동조합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
5.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·운영 등

6.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

7.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 (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업무

2. 소비자단체 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행하는 교육·홍보·공동구매·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

3.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·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 (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)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·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) ①시·도지사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소비자권익증진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